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전 기 사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창양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
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자, 전기판매사업자 등이
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(안 제5조의5 9호 신설)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
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
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26. ~ 2023. 2. 6.)

3) 행정규제 : 국조실 규제심사 사전협의결과 규제 비대상

으로 既검토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5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 5 제9호

9.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
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부 칙

이 영은 2023년 공포 당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5(전기공급의 거부 사유) 법 제14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5.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.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: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.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: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.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: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.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: 사용 예정일 4년 전 <신설>	제5조의5(전기공급의 거부 사유) 법 제14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9. <신설> 제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	
연 락 처	(044) 203 - 3907